

해결을 위한 한국 법원의 발전 방향*

수진**

예

- I.
- II. 환경전문재판부의 설치현황
- III. 환경소송의 실무처리방법 및 판례
- IV. 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법원실무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
- V. 결론

국문초록

거주하는 주민 23명은 2007년 2월 최초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및 자동차 제조회사를 상대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자신들이 천식, 만성 기관지염 등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및 오염물질의 배출금지를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환경전문재판부는 2010년 1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과 원고들의 질병사이에 인과관계의 입증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사건의 상고심이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대법원은 환경소송과 관련해서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대한 합리적 해석 작업을 통하여 부수적이거나 그 법규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의 보호, 즉 '사익보호성'을 도출하고, 근거 및 관계 법규가 환경상 침해의 영향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그 영향권 범위 내의 주민에 대해 환경상 이익의 침해

* 본 논문은 2013년 10월 25일 개최된 한국환경법학회 제115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문을 수정·보완하여 투고하였음.

** 인천지방법원 판사

사실상 추정하고, 그 영향권 밖의 주민이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환경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의 확대를 꾀해 왔다. 그러나 법원이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제3자의 법률상 이익을 일반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금지를 구하는 사전조치로서의 환경행정소송은 원고적격 심사 단계에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 각하 판결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1990년에 제정된 개별환경법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미국의 맑은공기법(Clean Air Act)이나 맑은물법(Clean Water Act)과 달리, 환경피해자들에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직접 청구할 사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피해자들은 최후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이미 발생한 피해의 배상을 구하거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오염물질의 배출 금지를 청구하여 왔고, 실무에서는 주로 소음소송 및 일조소송과 관련한 이론과 판례가 정립되어 왔다.

법원은 일조소송의 경우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를 인정하고, 부동산 시가 하락액의 배상을 명하는 등 일조이익을 소유권에 기초한 보호법익으로 판단하고 있고, 공사장 소음이나 수질오염으로 인한 기축폐사 사건의 경우에도 재산권적 의미의 영업피해의 배상을 명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원이 재산권과 분리된 순수한 의미의 환경소송으로서 공항소음, 도로소음, 공사장 소음 사건에서 인근 주민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경우 모두 환경피해 자체의 객관적인 수치 측정이 가능하며 결과발생이 즉각적인 경우이고, 대기오염 또는 수질오염으로 인한 질병발생과 같이 환경피해 자체의 객관적인 수치 측정이 어렵거나 결과발생이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경우에는 법원이 입증책임의 완화 이론을 적용하여 위법성을 인정하거나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는 거의 없다. 그러나 후자의 환경침해는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로서 전자의 일시적인 환경방해 행위보다 중대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이 정도가 심화되고, 그 원인물질의 도달경로나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향후 주된 환경분쟁의 유형이 될 수 있는 분야이다. 현재 대기오염소송이 대법원에 계속 중인 만큼 앞으로의 환경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환경소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환경물질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기관, 의료계, 학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환경피해 구제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I.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유출되고 있는 방사능 물질이 인근 국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배기가스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전 세계 기후 변화를 초래하여 인류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 위기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정부와 국회의 환경규제안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피해자 개인이 오염물질 배출의 금지 및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환경소송의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오염물질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뿐 아니라, 어느 정도 이상의 오염물질 배출을 위법하다고 볼 것인지 기준 설정이 어려운 분야이다. 이러한 환경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법원을 설치하거나 환경전문재판부를 활성화 하려는 노력이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¹⁾,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환경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서울고등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 지정되어 있는 환경전문재판부 역시 별도의 물적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문법관이나 전문위원이 배치되어 있지도 않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환경전문재판부라 하더라도 오염물질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자체적인 역량이 부족하여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외부기관의 감정결과에 의존하여 환경분쟁을 처리하여 왔다. 게다가 일반법관이 단기간 환경전문재판부에 근무하면서 환경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환경소송의 특수한 문제인 ‘입증의 어려움’, ‘피해의 간접성, 광범위성’ 및 ‘피해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키우기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오염 방지 또는 환경피해 구제를 위한 법원의 역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환경전문재판부의 현황, 판결례 및 실무처리 방

1) 버몬트 주 환경법원, 브라질 환경법원 및 케냐 환경 및 토지 법원이 각 설치되어 환경분쟁해결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논의가 2013. 10. 25. 개최된 한국환경법학회 제115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이루어졌다. 참조 발표문은 Justice Antonio H. Benjamin,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Court and Environmental Law in Brazil”, Former Environmental Judge Merideth Wright, “Environmental Courts and Judges – Experiences of the Vermont Environmental Court and others since 1990”, Justice Munyao Sila, “Experiences from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Kenya Environmental Court”

소개하고, 환경분쟁 해결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우리 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설치현황

1.

(1) 전문재판부 현황

우리나라에는 서울행정법원에 20개의 재판부²⁾가 있고 서울고등법원에 11개의 행정재판부³⁾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비롯하여 각 지방의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1개 정도의 행정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 중 환경사건 전문재판부가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

이는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대법원이 현행 행정소송법 제12조의 ‘행정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해석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일반적인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법률상 이익”이란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익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받아 본안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 극히 드물었다.

환경소송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대해 합리적 해석 작업을 통하여 무수적이거나 그 법규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의 보호, 즉

2) 2013. 10. 현재 11의 합의재판부 및 9개의 단독재판부가 설치되어 있고, 합의재판부 중 4개 재판부는 노동·난민사건 전담부로, 5개 재판부는 조세·도시정비 사건 전담부로, 나머지 2개 재판부는 토지수용·주민 사건 전담부로 지정되어 있고, 단독재판부의 경우 5개 재판부가 산재·운전면허 사건 전담부로, 4개 재판부가 조세·산재·운전면허 사건 전담부로 각 지정되어 있다.

3) 서울고등법원에는 2013. 10. 현재 11개의 행정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으나, 모두 조세, 토지수용, 노동, 공정거래 사건 중 일부 사건의 전담부로 지정되어 있다.

‘을 도출하고,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의 침해 또는 침해 우려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면서도, 근거 및 관계 법규가 환경상 침해의 영향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그 영향권 범위 내의 주민에 대해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사실상 추정하고, 그 영향권 밖의 주민이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원고적격의 확대를 꾀하였다. 그러나 법원이 환경침해를 받은 제3자의 원고적격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않았기 때문에,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금지를 구하는 사전조치로서의 환경행정소송은 원고적격 심사 단계에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 각하 판결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⁴⁾. 따라서 환경오염사업 시행지역 인근 주민들의 경우 환경오염사업 자체의 취소, 중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행정소송을 포기하고, 우회적인 수단으로서 민사소송으로 이미 발생한 피해의 배상 및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침해의 금지를 청구하여 왔다.

한편, 오염물질 배출자의 공장설립허가와 관련된 인, 허가 처분 취소소송 등은 관련법상 허가요건의 충족 내지 절차 준수 여부가 심사 대상이 되므로 일반적인 행정소송 사건과 다른 특별한 환경법적 논점이 많지 아니하기 때문에 별도의 환경사건으로 분류하여 처리하고 있지는 않고, 이에 따라 행정법원에는 별도의 환경전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2) 2013 환경 행정소송의 유형 분석

2013. 1. 1. 부터 2013. 10. 현재까지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 제기된 제3자의 환경침해를 원인으로 한 행정소송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4) 확대하기 위해 행정소송법의 해당 조항의 “법률상 이익”을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으로 개정하려는 노력도 있었으나 입법화에 이르지지는 못하였다.
 현행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문언과 같이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는 한 그 해석과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으로는 김국현, 공장허가와 수돗물 급수 주민의 원고적격, 특별법연구 제10집, 2012, 제509면.

유형	건축허가 ⁵⁾	사업승인·허가 ⁶⁾	도시계획 ⁷⁾	기타 ⁸⁾	합계
사건수	3	2	4	1	10
각하	3	2	1	1	7
기각	-	-	3	-	3
인용	-	-	-	-	-

2.

(1) 전문재판부 현황

2013. 10. 서울고등법원의 13개의 형사재판부 중 환경사건 전문재판부는 존재하지 않고⁹⁾,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0개의 형사합의 재판부 및 6개의 형사항소 재판부 중 1개의 항소재판부¹⁰⁾가, 18개의 형사단독 재판부 중 3개의 재판부¹¹⁾가 환경형사 전

5) 서울고등법원 2013. 05. 31 선고 2011누7245 건축허가 변경 처분취소 - 피주 열병합발전소 건축허가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2013. 05. 31 선고 2012구합42854 건축허가취소 등 - 단독주택 폐수배출허가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2013. 02. 22 선고 2011구합38292 건축허가사항변경 3차설계변경 허가처분취소.

6) 서울행정법원 2013. 08. 23 선고 2013구합4293 발전사업허가무효확인등 - 석문면화력발전소 사업허가 절차 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13. 08. 30 선고 2012누27291 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 제2경인고속도로 사업승인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3. 08. 22 선고 2012구합28940 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 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7) 서울고등법원 2013. 07. 04 선고 2012누38567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재결등취소 - 골프연습장 조성계획 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13. 08. 29 선고 2012누33388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서울행정법원 2013. 04. 19 선고 2012구합32048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도시계획 관련 사건의 경우 환경영향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관련규정에서 환경영향평가절차를 거치는 등 인근지역 주민들의 절차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을 인정받아 본안판단을 받은 사건이 다수 있다.

8) 서울행정법원 2013. 02. 01 선고 2012구합27886 대학이전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 - 청운대학교 이전 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9) 환경 형사사건의 경우 대부분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경미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 형사단독 재판부에 사물관할이 있으며, 법정형 중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대부분이므로, 그 항소심은 지방법원 항소부에 관할권이 있어 별도로 고등법원에 환경형사재판부를 설치할 실익이 없는 상황이다.

10) 이 재판부는 외국인, 환경, 식품, 보건 사건의 전문재판부이다.

11) 이 3개의 재판부는 모두 마약, 환경, 식품, 보건 사건의 전문재판부이다.

지정되어 있으며, 수원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의 경우에도 각 형사단독 중 1개의 재판부가, 형사항소 중 1개의 재판부가 각 환경전문재판부¹²⁾로 지정되어 있다.

(2) 개관

형사재판부 중 환경전문재판부는 형법 이외에 환경보호를 직·간접적 보호법익으로 하는 특별법 위반 사건을 다루고 있으나, 환경민사 전문재판부와 달리 2013년 한 해 동안의 환경사건 처리건수가 각 1~2건에 불과하고, 사건 내용도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건¹³⁾, 뱀 등 야생동물 포획 등을 원인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¹⁴⁾, 불법용도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건축법 위반 사건, 폐기물처리절차 위반 등을 원인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¹⁵⁾ 등으로 단순한 절차위반 사건이 주를 이루고, 그 중 대부분 사건에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위와 같이 형사재판부 중 환경전문재판부가 처리하는 사건의 내용으로 볼 때, 위 사건들은 다수에게 환경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등을 원인으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환경소송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규모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기업을 처벌하는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하는 한 환경형사재판부의 환경사건을 환경소송의 쟁점으로 논의할 실익은 적다고 보인다.

3.

(1) 환경민사 전문재판부 현황

2013. 10. 현재 서울고등법원의 50개의 민사재판부 중 1개의 환경사건 전문재판부

12) 경우 명칭은 식품, 보건 전문재판부이다.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3노187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5. 23 선고 2012고단6577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5. 02 선고 2013노362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고단5641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지정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42개 민사합의 재판부 중 2개의 재판부가 환경전문재판부로 지정되어 있으며¹⁶⁾, 수원지방법원에는 2개의, 인천지방법원에는 1개의 민사합의 재판부가 각 환경전문재판부로 지정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소송의 원고적격 인정의 엄격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물질로 인한 피해 등 환경분쟁은 대부분 민사소송의 형태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환경민사, 환경형사, 환경행정 소송 중 가장 비중이 높고, 사례가 축적되어 있는 분야는 환경민사소송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환경민사소송을 중심으로 환경소송을 논의하고자 한다.

(2) 2013 서울중앙지방법원 환경전문재판부의 환경소송의 유형¹⁷⁾

[14민사부(환경전담부) 2013. 8. 31. 기준 진행 중인 환경소송 유형]

유형		도로소음	공사소음	일조	진동	분진 ¹⁸⁾	합계
접수 사건수	32	0	1	1	1	6	33

[제14민사부(환경전담부) 2013. 1. 1. 부터 2013. 10. 10. 까지 판결 선고한 환경소송 유형]

환경소송 유형	공항소음 ¹⁹⁾	도로소음	공사소음, 진동	일조	분진	기타	합계
접수 사건수	0	0	1	1	0	0	0

[제25민사부(전자 환경전담부) 2013 1. 1. 부터 2013. 10. 10. 까지 판결 선고한 환경소송 유형]

환경소송 유형	공항소음	도로소음	공사소음, 진동	일조	분진	토양오염	합계
접수 사건수	4	0	1	1	0	2	5

16) 기존에는 1개의 재판부가 환경전문부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10. 5. 민사소송의 전자소송 도입으로 인하여 전자소송 전담 환경전문재판부가 1개 더 신설되었다.

17) 본 유형분석은 현재진행중인 환경사건의 경우 재판부 통계표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판결 선고한 사건의 경우 대법원 판결문 검색 포털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실제와 오차가 있을 수 있다.

18) 현재 진행 중인 분진사건은 시멘트공장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진폐증 등 분진으로 인한 질병 발생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다.

19) 공항, 비행장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2년~3년 동안의 소음피해를 원인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형태이므로 2008년경 공항소송이 다수 제기된 이후 몇 년 간 공항소송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새로

[14민사부(환경전담부) 2007. 2. 21. 부터 2009. 2. 20. 까지 2년간 판결 선고한 환경소송 유형]

유형		도로소음	공사소음, 진동	일조	분진	폐기물/ 수질오염	합계
접수 사건수	38	3	3	26	1	2	73

III. 실무처리방법 및 판례

전문재판부는 환경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오염배출자의 고의, 과실, 위법성 등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과 이론을 발전시켜 왔다. 아래 각 분야에서 발전된 모든 이론을 소개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필자가 2년간 환경민사 전문재판부에서 사건처리를 하는 동안 경험하였던 실무처리 방법 및 판례를 소개하는데 그치기로 한다.

1. 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

(1) 사건

() 일반론

공항 등의 소음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최초 매항리 공군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1998. 2. 28. 서울지방법원에 집단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후 법원이 2001. 4. 11. 최초로 소음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인정²⁰⁾한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우리나라 환경소송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손해배상 청구 사건 1건당 당사자(원고)가 5,000명에서 50,000명으로 대규모로 제기되고 있으며, 별도의 손실보상 규정이 제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해가 계속되는 기간

운 손해발생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었고, 2013. 10. 경 현재 등을선도가 그려진 감정인의 감정서가 도착한 상태여서 조만간 상당수의 공항사건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20)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01. 4. 11. 선고 98가단55916 판결, 항소심 서울지법 2002. 1. 9. 선고 2001나 29253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장래에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될 성질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한 판례 이론이 상당 부분 정립되어 있다.

() 판례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김포공항 사건) - 김포공항이 배출하는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 주민들에게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김포공항의 설치·관리상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상의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제3종 구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중 85웨클(WECPNL)²¹⁾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성을 띠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인근 주민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 사례

21) 측정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객관화된 측정절차와 기준에 의하여야 하는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인 소음에 대하여는 데시벨(dB)이라는 소음측정단위가 사용되지만 항공기소음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웨클(WECPNL)이라는 특수한 소음측정단위가 사용된다. 웨클 단위는 1971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가 점증하는 항공기소음피해에 대처할 국제적 기준을 마련할 목적으로 제시한 항공기소음측정단위로서 항공기소음이 시간대별로 달라지는 점, 같은 크기의 소음이라도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강도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특정 지점에서 24시간 동안 수회 항공기소음의 정도를 측정한 후 시간대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한 소음영향도의 단위를 말하고, 우리나라에서는 1991. 11. 5. 환경부에서 고시한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 따라 항공기소음의 측정단위로 채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 항공법 시행규칙 제273조는 웨클 단위에 의한 항공기소음영향도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제10조의2 등은 웨클수치에 따라 공항소음피해지역과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 또는 공항주변인근지역과 기타 지역 등을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웨클에 의한 산정방식은 이·착륙 항공기의 수나 비행시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타 환경기준과의 비교가 어렵고 인체에 대한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한계 때문에 지금은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고 있고 그 외의 나라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영국은 NNI(Noise and Number Index = WECPNL - 40)라는 독자적인 단위를 사용하고 있고, 미국은 NEF(Noise Exposure Forecast; EPNL값을 기본단위로 하되 야간에 대하여 12dB의 가중치를 둔 = WECPNL - 48) 또는 Ldn(day-night sound pressure level; Leq값을 기본단위로 하되 야간에 대하여 10dB의 가중치를 줌 = WECPNL - 13)을 사용하고 있다. ICAO도 1986년에 이르러 웨클 단위의 사용제안을 철회하였으며, 현재 전 세계적인 추세로는 인간의 감각적 반응에 가장 잘 대응되는 소음측정단위로 알려진 Leq(등가 소음도; 일정 시간 내의 변동하는 소음의 평균값에 기반을 둔 측정단위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근거

군용비행장 또는 항공기 그 자체를 영조물(또는 공작물)²²⁾로 보고, 그 설치·관리(보존)상의 하자²³⁾에 따른 ‘상태책임’²⁴⁾을 묻는 것으로서 공항이나 군용비행장의 설치·관리자인 국가 등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5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 이론은 이른바 ‘기능적 하자(또는 공용관련 하자)’의 개념을 인정하는 이론으로서 항공기소음과 관련하여 오사카공항 사건의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²⁵⁾에서 처음 인정된 이래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져 현재 실무상 확고한 이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

(라) 위법성 판단기준

종래 통설²⁶⁾ 및 판례²⁷⁾에 의하면 환경침해로 인한 인적 불법행위책임에서의 위법

- 22) 말하는 ‘영조물(또는 공작물)’은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으로서 토지 또는 건물에 부착된 물적 설비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항공기와 같은 동적 설비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박준서, 주석민법(채권각칙 8), 2000, 한국사법행정학회, 제468면.
- 23) 하자란 ‘영조물(또는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에 흠결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영조물(또는 공작물)의 설치 당시부터 존재하는 하자를 ‘설치의 하자’로, 그 후 관리되어지는 사이에 발생한 하자를 ‘관리(또는 보존)의 하자’로 구분한다. 박준서, 앞의 책, 제470면.
- 24) ‘위험책임’ 또는 ‘무과실책임’이라고도 한다. 김동희,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의 개념, 법학 제43권 제1호, 2002, 제106면.
- 25) 최고재 1981(소화 56). 12. 16. 대법정판결 [소화 51년(가) 제395호 대판국제공항야간비행금지등청구 사건] 이 사건에서 최고재판소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가져야 하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안전성의 결여, 즉 타인에게 위해를 미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란, 해당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자체에 존재하는 물리적·외형적인 결함 내지 불비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위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을 공용목적에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고, 또 그 위해는 영조물의 이용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이용자 이외의 제3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즉, 해당 영조물의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없어도, 이것을 초과하여 이용함으로써 위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용에 제공하는 한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있어, 그러한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일이 없고, 또 적절한 제한을 가하지 않은 채 이것을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그 결과 이용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위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것이 위 설치·관리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국가배상법에 의한 책임을 면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강원, 공해배상소송에서의 수인한도론과 공용관련하자,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3권, 2004, 제299면.
- 26) 손윤하, 환경침해와 민사소송, 청림출판, 2005, 제67면.

요건은 환경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 법적 근거로는 흔히 민법의 상린관계규정인 제217조²⁸⁾가 제시되고 있다. 공항이나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음 그 자체의 정도 및 태양이다. 구체적으로는 항공기소음의 객관적인 수치, 항공기의 운항횟수, 주간운항 및 야간운항의 횟수, 공항의 설치시기 및 존속기간, 취항하는 주요 항공기의 기종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항공기의 운항방법[이·착륙, 통과, 선회, 급상승 및 급강하(Touch & Go)], 날짜별·요일별·시간대별 운항횟수 등 항공기소음에 특유한 제반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²⁹⁾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기준으로서의 소음 정도에 관하여는 각 공항이 위치한 주변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다른 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대체로는 소음, 진동규제법상 소음기준 및 공항 인근지역의 지역성 등을 고려하여 80웨클(WECPNL) 또는 85웨클(WECPNL)을 넘는 소음지역에 거주하는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피해를 인정하고 있으며, 지역별 수인한도 인정 기준은 아래 [공항소음 수인한도 및 손해배상액 인정 기준] 해당란 기재와 같다.

()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공항소음으로 인한 손해로서 인근 부동산교환가치 하락액, 방음시설 설치비용 및 영업이익 감소액 등도 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³⁰⁾ 손해발생 및 손해액의 증명 문제로 인하여 대부분 원고들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하고 있고,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 배상을 명하고 있는 위자료의 액수는 아래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27) 1997. 10. 28. 선고 95다15599 판결 등.

28)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②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29) 손윤하, 항공기소음에 의한 피해구제를 위한 민사소송의 문제점, 법조 제54권 제3호, 2005, 제212면.

30) 강종선, 항공기소음 관련 민사소송의 제 논점, 사법논집 제44집, 2007, 제254면.

[사건의 수인한도 및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공항	수인한도 기준	배상액 산정 기준/1인
2003다49566	김포공항	85웨클	제2종 구역 1일 2,000원 제3종 '가'지구 1일 1,000원
대법원 2012다13569	대구비행장	85웨클 ³¹⁾	90웨클 이상 지역 월 50,000원 85웨클 이상 지역 월 30,000원
서울고등법원 2012나3762	군산비행장	80웨클	90웨클 이상 지역 월 45,000원 80웨클 이상 지역 월 30,000원
서울고등법원 2007나60204	충주비행장	80웨클 ³²⁾	90웨클 이상 지역 월 60,000원 85웨클 이상 지역 월 45,000원 80웨클 이상 지역 월 30,000원
서울고등법원 2010나103002	서산 해미비행장	80웨클	90웨클 이상 지역 월 45,000원 80웨클 이상 지역 월 30,000원
서울고등법원 2011나56240	오산비행장	80웨클 ³³⁾	95웨클 이상 지역 월 60,000원 90웨클 이상 지역 월 45,000원 80웨클 이상 지역 월 30,000원

() 소음 감정절차

정도에 관한 증거방법은 일반적으로 현장검증과 감정 결과에 의하고 있는 바, 현재 항공기소음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법령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담당재판부가 임의로 환경공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종합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소음전공 교수 또는 그 대학의 소음연구센터나 도시과학연구원, 환경과학연구소 등에 재직하고 있는 연구원 등을 감정인으로 선정한 다음, 현장검증기일에서 감정인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통상 7일 이상) 장애물 또는 주변 다른 소음의 영향이 가

31)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985호 사건에서는 대구비행장의 수인한도 기준도 80웨클로 낮추었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대구비행장의 경우 인근 지역이 도시지역으로서 농촌지역보다 높은 소음기준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수인한도 인정기준을 85웨클로 변경하였다.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56815호 사건에서 85웨클을 수인한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7. 09. 19 선고 2006나108499 손해배상 사건에서 80웨클로 수인한도 기준을 낮게 인정하였다.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33259호 사건에서 마찬가지로 85웨클을 수인한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9. 01. 14 선고 2007나5511 손해배상 사건에서 80웨클로 수인한도 기준을 낮게 인정하였다.

적은 장소의 실내소음(창문을 닫은 경우와 연 경우로 구분) 및 실외소음을 측정하도록 명하고 있다. 한편, 항공기소음의 영향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의 수와 거주범위는 매우 광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개인별로 특정하여 소음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우선 감정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 거주지역의 지형이나 상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마을마다 한 곳 또는 여러 곳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소음을 측정하고 다음 표준지의 소음을 연결한 등음선도를 감정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감정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감정서를 제출받은 법원은 등음선도상에 피해자들의 주거지 위치를 특정하도록 하여 그곳의 소음수치를 피해자에게 도달된 소음의 정도로 사실인정을 하고 있다.

() 위험에의 접근 이론

우리나라 공항소음 사건의 문제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당초 공항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않던 주민들이 공항사건 판결 이후 공항 인근 소음피해 지역으로 새로 이사를 온 뒤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음배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의 면책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아직까지는 이를 면책사유가 아닌 손해감경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13569 판결(대구비행장 사건)은 「소음 등의 공해로 인한 법적 쟁송이 제기되거나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는 등 피해지역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또한 이러한 사실이 그 지역에 널리 알려진 이후에 이주하여 오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위험에의 접근에 따른 가해자의 면책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일반인이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 밖에 위험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대구비행장 주변이 계속적인 항공기소음 노출 지역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졌다고 보이는 1989. 1. 1.

전입한 주민들의 손해액을 30% 감액하고, 나아가 이전에 제기된 대구비행장 인근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의 내용이 널리 알려졌다고 보이는 2011. 1. 1. 이후 전입한 주민들의 손해액을 50% 감액하였다.

(1) 사건

() 법적 근거 -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 책임

(나) 위법성 판단기준 - 수인한도론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³⁴⁾은 부천시역에서 경인고속도로 인근 빌라의 주민들이 위 고속도로의 설치,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인근 고속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입은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유지청구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2003. 11. 14. 선고 2003다27108 판결 등 참조.)」고 하면서 위 주거지의 1일 평균 소음도는 66dB에서 78dB까지 나타나고 있는 점, 부천시가 통행 차량에 대한 속도 제한, 우회 등의 조치를 하거나, 방음시설에 관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가 차량운행 등을 규제할 경우 교통소통에 지장이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반대한 점 등을 이유로 65dB 이상이 소음을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피해로 인정하였다.

(다) 유지청구의 허용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근거한 방해배제로서 위법성 판단기준으로서 수인한도를 엄

34) 한국도로공사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한 사건이다.

적용하여 소음의 정도와 방음벽 설치비용을 비교형량한 뒤 방음벽 설치를 통하여 얻게 될 소음감소 및 이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 얻게 될 주거의 이익이 방음벽 설치비용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지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위 같은 판결은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근의 소음으로 인하여 정온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 중략. 원고는 기존 방음벽의 옹벽을 이용하여 보강할 수 있는 최대 높이인 7.5m 높이의 방음벽의 설치를 주장하나, 이 사건 빌라의 최고층인 4층의 높이가 12m 정도됨에 따라, 소음 피해가 가장 심한 4층 주택의 소음도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13m 높이로 방음벽을 보강할 것이 요청되고, 그 공사비용은 7.5m로 보강할 경우에는 5억 원 정도, 13m로 보강할 경우에는 12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알 수 있다. 중략. 원심이 1일 평균 소음이 65dB 이상인 주택에 거주하는 피고 주민들의 유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고속도로를 설치·관리하는 원고는 그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이 사건 고속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이 65dB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3) 소음 사건

공사장 인근에서 가축업, 어류양식업을 운영하던 주민이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가축이 집단 폐사하였음을 이유로 영업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건³⁵⁾이 주를 이루고, 인근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건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감정결과에 의하여 폐사 및 산란을 저하에 따른 영업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특징을 가지게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 본 도로소음 사건과 유사하게 처리된다.

35) 2008. 4. 10 선고 2006다40669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8358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194 판결.

2. 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

(1)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 위법성 판단기준 - 수인한도론

2007. 6. 14. 선고 2005다72058 판결 이후 다수는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그 일조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침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동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침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일조침해의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수인한도론을 채택하였다.

어느 정도의 일조량 및 일조시간 감소가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인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최초 서울고등법원 1996. 3. 29. 선고 94나11806호 판결이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저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이래 판례는 대체적으로 동지일 기준 총일조 4시간, 연속일조 2시간 기준을 따르고 있다.

() 일조 감정절차

감정절차는 2단계로 나뉜다. 먼저 국내대학의 일조분석팀³⁶⁾에 일조시간 측정을 맡겨 감정결과를 받아본 뒤 시가감정인에게 일조침해가 전혀 없는 경우의 부동산의 기준시가와 일조침해 이후의 시가감소분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위 일조시간감정결과 및 시가감정결과에 따라 손해발생여부 및 손해액을 판단한다.

(다) 손해 인정 및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일조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실무는 일조침해로 인하여 건물 소유자가 입은 손해는 재산상 손해로서 건물의 시가하락분 상당액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일조권이 환경권임을 전제로 환경피해를 구제하는 의미보다는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 소유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는 의미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 법원은 일조피해 건물의 거주자들에게도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서 위자료의 지급을 명해왔기 때문에 소유권과 분리된 생활상의 이익으로서의 일조이익의 침해 자체도 손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조이익 자체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로서 배상을 명하고 있으며, 대체적인 금액은 일조침해 시간에 비례하여 100만원 내지 200만원 단위에서 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³⁷⁾, 1회적인 배상에 그칠 뿐 지속적인 일조이익의 침해를 인정하여 장래의 기간에 대한 별도의 배상여지를 남겨놓지는 않고 있다.

(2)

(가) 법적 근거

일조, 조망 등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공사금지청구 등 유지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민법 제214조에 기초하여 소유권,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유지청구를 허용하고 있으나, 환경권 자체에서 방해배제를 구할 직접적인 청구권이 도출된다고 보지는 않고 있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은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36) 한양대학교 일조분석팀이 일조시간 감정을 맡고 있다.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19. 선고 2008가합8152 판결, 항소되었으나 화해로 종국되었다.

있던 경관이나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 등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인접 대지 위에 건물의 건축 등으로 그와 같은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토지 등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건축 금지 등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인용하였으나, 환경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은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 명시적으로 환경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부정하고 있다.

() 위법성 판단기준

유지청구소송 실무에서 위법성 판단기준으로서의 수인한도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 부산지법 2009. 8. 28. 자 2009카합1295 결정은 「일조의 침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자체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행사 자체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욱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3.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1) 입증의 완화 이론 도입 - 개연성 이론

환경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초로 인과관계의 증명완화 이론인 개연성 이론(원인물질의 배출 - 원인물질의 도달 - 피해발생의 3단계 입증을 요하고, 위 3단계의 입증이 이루어지면 피고가 반증으로 오염물질의 영향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수 없다는 이론)을 발전시켜온 분야로서 오염물질 방출 또는 해수온도 상승으로 인한 인근 양식어장의 어업피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2)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은 인근에서 양식장을 운영하는 어민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수질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오염물질과 어업피해 사이에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인과관계 및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성을 인정하였고,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2123 판결은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곤란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원인조사가 용이할 뿐 아니라 자신이 배출하는 물질이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사회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해기업이 배출한 어떤 물질이 피해 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사회 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 따라서 수질오염으로 인한 공해소송인 이 사건에서 (1) 피고들 공장이 위치한 여천공단에서 재첩 양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폐수가 배출되고, (2) 그 폐수 중 일부가 물의 흐름에 따라 이 사건 재첩 양식장에 도달하였으며, (3) 그 후 재첩에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각 모순 없이 증명되면 여천공단 공장들의 폐수배출과 재첩 양식이 폐사함으로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반증으로 (1) 피고들이 배출하는 폐수 중에는 재첩의 생육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않으며, (2) 원인물질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안전농도 범위 내에 속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간접반증으로 원고들의 재첩 양식장의 피해는 피고 공장들이 배출한 폐수가 아닌 다른 원인이 전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들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피해 및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하였다.

4.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1)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소송

2010나35659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 등 사건(일명 대기오염소송)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및 자동차 제조회사를 상대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천식, 만성 기관지염 등을 앓고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및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배출금지를 청구한 사건으로, 이 사건에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환경재판부는 인과관계의 원화이론을 적용하면서도 오염물질배출과 원고들의 질병사이에 인과관계의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6309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현재 원고들이 상고하여 대법원에 사건이 진행 중이다.

(2) 담배소송

서울고등법원 2007나16979 손해배상 사건(일명 담배소송)은 흡연으로 인하여 폐암 등에 걸린 원고들이 대한민국과 국내 담배 제조, 판매 회사를 상대로 담배 성분 자체에 폐암유발물질이 들어있다는 제조상의 결함과 표시상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물책임을 묻은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이 사건에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인과관계 원화이론인 개연성론을 받아들이면서도 흡연자 개인의 자발적인 흡연행위가 개입된 담배와 공해와의 차이점을 분석한 뒤 담배제조, 표시상의 결함과 원고들의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면서, 1심 판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99가합77378호 사건의 결론을 유지하였고, 이 사건 역시 현재 대법원에 소송계속 중이다.

(3) 공장분진 등 소송

서울고등법원 2006나66236 손해배상 사건은 가구제조 및 조형물 도색 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위 공장으로부터 배출된 미세먼지로 인하여 천식악화 등의 피해를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 4946 사건에서는 원고가 감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증거부족으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는 신체감정절차는 진행되었으나 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미세 먼지가 배출되었다는 사실과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집단소송과는 달리 대부분의 1:1 분진사건은 환경분쟁조정절차에서 합의 또는 배상결정에의 승복으로 종결되는 점에 비추어 위 사건은 배출물질과 원고의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IV. 해결을 위한 법원 실무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

1. 인적 구성

(1) 구성원의 비전문성 및 환경소송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 부족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재판예규 제1386호 1998. 7. 6. 제정] 제6의 가항에서는 각급 법원에 설치할 수 있는 전문재판부의 종류 및 담당 사건의 유형을 예시하고 있는데, 민사 및 형사 전문재판부에 ‘환경재판부’를 두도록 예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고등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및 형사 재판부에 환경전문재판부가 지정되어 있다. 또한 위 예규 5. 의 라. 항에서는 민사 및 형사 전문재판부 소속 법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법관의 희망과 서열, 연구 실적, 전문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 내에 환경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법관이 드물기 때문에 대체로는 법관의 희망이나 서열에 따라 환경전문재판부 소속 법관이 정하여져 왔다. 게다가 위 예규 제7. 의 나. 항에서는 전문재판부에 배치된 법관의 사무분담 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간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³⁸⁾ 전문재판부 소속 법관

38) ‘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판예규 제1430호]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재판장인 법

하더라도 실제로는 2년 이상 전문재판부에 근무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환경소송의 경우 다수당사자가 집단적으로 제기한 소송이 대부분인데다가, 오염물질의 존재 및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감정 기간이 장기화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년 안에 동일한 법관이 사건의 법리와 내용을 연구하고, 감정절차에 관여한 뒤 판결 선고까지 마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위와 같이 일반 법관이 환경전문재판부에 최대 2년간 근무한 뒤 재판부를 떠날 수 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법관 개인의 동기나 노력 없이 환경소송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과 전문성을 키우기가 어렵다. 또한, 해당 법관이 환경전문재판부를 떠난 이후에는 환경법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환경소송에서의 법원의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수도 없다. 한편, 환경전문재판부에 새로 배치된 법관의 경우에는 환경소송의 특수한 문제인 ‘입증의 어려움’, ‘피해의 간접성, 광범위성’ 및 ‘피해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법관 스스로의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미 선고단계에 이른 환경소송의 판결을 하게 된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기존 환경분쟁과 관련하여 선고된 법원의 판결 중 환경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나 환경분쟁에 대한 올바른 접근 방식을 가진 판결이 드물고, 따라서 법원이 환경오염 방지 또는 환경피해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2) 전문성 확보를 통한 환경문제의 인식 개선 방안

법원조직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2항은 특허법원과 가정법원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2. 10. 4. 신설된 법관인사규칙 제11조의2는 위 각 법원에 전문 법관을 둘 수 있는 근거로서 ‘재직기간 중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를 둘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임된 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원으로 전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판사의 전보³⁹⁾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가정법원과 특허법원의 법관의 경우에도 위 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2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고 다른 법원으로 전보되어 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환경법원이 별도로 설치되

2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은 1년 단위로 사무분담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39) 제9조(판사의 전보) 판사의 전보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인적 자원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적절히 실시한다.

환경전문법관을 둘 수 있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위 법관인사규칙 제11조의2가 전문법관을 특허법원과 가정법원에만 두도록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환경전문재판부에도 환경전문법관을 둘 수 있는 규정 자체는 존재한다고 보인다.

환경전문재판부에 배치할 법관을 선정함에 있어, 환경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관이 있다면 해당 법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법관이 없는 경우에도 기존과 같이 법관의 희망과 서열, 연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되, 최대 5년 정도 환경전문재판부에서 환경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해본다.⁴⁰⁾ 환경전문재판부를 진정한 의미의 전문재판부로 운영하여 전문성이 있거나 특별한 동기가 있는 전문법관이 5년간 근무하도록 한다면 환경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에 기초한 새로운 접근 방식의 판결을 기대해 볼 만하다.

2. 감정절차 보완 방안

(1) 문제점

먼저 공항소음 소송에서는 앞서 실시한 바와 같이 대학이나 연구소 소음분석팀에 소음측정을 의뢰하여 표본수집을 통한 등음선도를 작성하고 있으나, 감정과정에서 법원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음측정결과의 정확성이 담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소음측정기가 워낙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 서울중앙지방법원 총무과에서 2008. 경 1개의 소음측정기를 구비하여 보관하고 있을 뿐이다.

일조소송의 경우 기존 실무는 대학이나 연구소 일조분석팀에 일조시간을 분석을 의뢰한 뒤 시가감정인이 위 일조시간을 기준으로 시가하락액을 산정하여 왔다. 그러나 일조시간을 분석함에 있어 입사각을 고려할지 여부나, 기준창 거실과 실제 거실 역할을 하는 방 중 어디로 할지 감정인마다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부동산 시가 자체가 아닌 일조시간 감소율에 따른 시가 산정 역시 감정인마다 기준이 달라 법원이

40) 경우 다른 판사와의 균형상 수도권 또는 지방 근무기간에 해당 지역 전문재판부 근무 기간을 통산하여 위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곧바로 다른 지역으로 전보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⁴¹⁾

가축, 어업피해 소송에서 소음이나 수질오염 등으로 가축이 폐사한 경우 영업피해액에 대한 감정을 가축전문가나 대학, 연구소 등에 의뢰하고 있다. 당사자가 다수인 사건도 상당 수 있는데다가, 이미 폐사한 가축의 산란율이나 기존 영업이익을 밝히기 어려운 사건이 많아 감정인의 추측이나 의견이 반영된 감정결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대법원에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사례가 종종 있다.⁴²⁾

(2) 전문화를 통한 조사관, 연구원 및 감정인단 구축

앞서 본 바와 같이 환경소송에서 감정결과가 가장 중요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감정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감정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감정결과에 의존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사조사관과 같이 환경전문재판부에 환경피해조사관을 배치하거나 재판연구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감정인과 동행하거나 따로 현장을 방문하여 오염도나 피해 정도를 측정하고, 감정기준을 제시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전문 재판연구원’ 제도를 통하여 환경법 분야나 환경과학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재판연구원을 환경전문재판부에 배치하여 자문을 구하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환경전담부를 활성화하여 각 재판부에 기본적인 공해측정장비⁴³⁾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전문재판부가 직접 측정한 기록과 감정결과를 대조해 보는 작업도 필요하다.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사건의 경우 감정인 명단에 있는 대학 자체를 감정인으로 선정하는 이외에 해당분야의 연구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나 기관을 알아내거나, 감정인으로 선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전문재판부와 환경관련 전문가, 기관이 평소 협조 체제를 긴밀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법원이 감정인이 아닌 외부 기관에 대한 자문을 적극적으로 구한 뒤,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파악하여 환경전문재판부 감정인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환경전문재판부의 전문성 확보와 재판부의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41) , 일조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문제, 환경소송의 제문제, 2011, 제3면.
 42) 위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40669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194 판결.
 43) 공항소음, 도로소음 사건에 있어서는 소음측정기를 의미함.

3. 협조

(1) 기관과의 협조 부족

동경대기오염소송 등 공해소송은 우리나라와 달리 ①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② 대기오염물질 또는 자동차배기가스와 위 호흡기질환의 인과관계 또는 역학관계에 대하여 연구하는 의료인이나 학자들 및 ③ 법률적인 조력을 하는 변호사들이 서로 협력하여 오랜 준비를 거쳐 소송을 준비할 뿐 아니라 소송 계속 중에도 원고단 집회들을 자주 열고 이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노출하여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하고, 승소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피고들과 사이에 조기, 전면해결을 위한 협상을 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포기시키고 화해를 시도하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이 드물다.⁴⁴⁾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소송이나 담배소송의 경우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된 원고들과 오염물질 배출 기업이 각 변호인단을 선임하여 대립 구도로 소송에서 공격 방어를 하는 외에 의료인이나 학자들의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다. 환경오염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과 다수의 인력을 투자할 수 있는 기업 측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기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우리나라 공해소송에서 법원의 적극적인 증거수집노력 없이 피해자들에게 인과관계 및 손해의 발생을 증명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 전문가, 기관과의 협조 방안

환경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법원은 중립적인 기관이므로 환경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인이나 학자들과 협력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법원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의료인이나 학자들에게 객관적인 연구결과에 대한 직권 사실조회를 통하여 자문을 구하는 한도에서 협력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이 역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연구능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44) , 동경대기오염 제1차 소송, 환경소송의 제문제, 사법발전재단, 2011, 제73면.

, 환경전문재판부의 활성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법원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의료계나 학계가 환경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환경피해자 내지 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하다.

4. 한계 및 발전 방안

(1) 재산권과 분리된 환경이익 인정의 어려움

실무에서 환경민사소송의 전형적인 예로서 일조소송의 경우 법원은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유지소송)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으로서 부동산 시가하락액의 배상을 명하는 등 일조이익을 소유권에 기초한 보호법익으로 판단하고 있고, 공사장 소음이나 수질오염으로 인한 기축폐사 사건의 경우에도 재산권적 의미의 영업피해의 배상을 명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어 독자적인 환경권을 인정하는 것에는 소극적이다.

환경민사소송에서 재산권과 결합되지 않은 순수한 의미의 환경소송으로서 법원은 공항소음, 도로소음 및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정신적 손해 배상을 인정하거나, 소유자 아닌 거주자의 일조이익 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고 있기는 하나, 위 두 경우 모두 객관적인 수치 측정이 가능한 환경피해의 경우에만 그 수치(소음정도 및 일조시간 등)에 근거하여 위법성을 판단하고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환경피해 자체의 객관적인 수치 측정이 어렵거나 눈에 보이거나 귀로 들리지 않는 환경피해의 경우⁴⁵⁾, 법원이 입증책임의 완화 이론을 적용하여 위법성을 인정하거나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는 거의 없다.

소음피해, 일조침해 등을 원인으로 하는 환경분쟁 사건은 그 피해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손해 발생여부가 명백함에 반하여,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으로 인한 건강침해의 경우 피해 범위도 광범위하고 재산손해나 일시적인 정신적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로서 중대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이 정도가 심화되고, 그 원인물질의 도달경로나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게

45)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한 공기 중 오염물질의 농도 증가, 이로 인한 질병의 발생, 오염된 수돗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피해 그 자체나, 그로 인한 질병의 발생.

향후 주된 환경분쟁의 유형이 될 수 있는 분야이다.

(2) 입증책임 완화 노력 필요

() 인과관계와 손해발생 증명의 구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질오염으로 인한 어업피해 사건에서 발전된 대법원의 개연성 이론을 통하여 법원이 환경소송에서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경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손해의 내용이 재산침해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이 위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완화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가령 앞서 살펴본 대기오염소송에서 이론상으로는 (1) 피고들이 제조한 자동차에서 천식이나 만성기관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배출되고, (2) 그 물질 중 일부가 대기의 흐름에 따라 원고들 거주지역에 도달하였으며, (3) 그 후 원고들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각 모순 없이 증명되면 오염물질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되었다고 보고, 피고들이 반증으로 (1) 피고들이 배출하는 배기가스에는 천식이나 만성기관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않으며, (2) 원인물질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안전농도 범위 내에 속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간접반증으로 원고들의 질병은 피고들 제조 자동차에서 배출한 배기가스가 아닌 다른 원인이 전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⁴⁶⁾, 위 사건의 재판부가 오염물질배출과 원고들의 질병사이에 인과관계의 입증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환경피해가 눈에 드러나지 않는 질병 등의 침해인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입증완화이론은 문언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환경피해가 눈에 드러나지 않는 질병 등의 침해인 경우에도 손해발생 자체와 인과관계의 증명을 분리하여 인과관계의 입증완화이론을 적용하려는 법원의 법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6) 재판부는 2002. 10. 29. '일본국, 동경도 및 수도권고속도로공단은 연대하여 원고 중 7명에 대하여 피해기간 및 피해 정도에 따라 1인당 330만엔 내지 2,750만엔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자동차 제조, 판매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피고들에 대한 오염물질배출금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

() 손해액 - 징벌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의미에서의 위자료 증액 고려

환경민사소송의 특징은 재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의 배상을 명하는 대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소액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항소음 소송의 경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음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될 것이 예상되므로 국가의 손실보상입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0년이 경과하도록 손실보상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손실보상을 하게 되는 경우보다 손해배상소송을 통한 배상금 지급의 지출 규모가 더 적거나 대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개인과 공장의 개인사업자 사이의 환경소송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단계에서 조정이 성립되거나 심의결정에 승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법원에 접수된 다수당사자 사건의 경우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여 소송상 화해를 통한 임의적 배상합의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 역시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소액이기 때문에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화해보다는 판결에 따르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 아닌가 싶다.

환경소송의 경우 결국 환경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의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고,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으로서 위자료의 액수를 획기적으로 증액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위자료의 증액은 환경소송에서의 기업으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 인식하도록 하고, 화해적 해결을 유도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예방하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법원이 현행 법 해석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3) 해석을 통한 유지청구소송⁴⁷⁾의 확대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전보하는 데 그치므로,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환경피해의 경우 손해배상청구만으로는 그 구제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전에 환경피해가 아예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거

47) ‘ ’라는 용어 자체는 상법 제402조 및 제424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이를 ‘금지청구소송(금지청구소송)’ 또는 ‘차지청구소송(차지청구소송)’이라고 부른다.

피해가 이미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더 이상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사전적 구제조치라고 할 수 있는 유지청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지청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부족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적 근거에 대한 명쾌한 이론정립이 내려져 있지 않는 등 이유로 활용이 미미한 실정이다.⁴⁸⁾ 실무상으로 유지청구의 대부분은 앞서 본바와 같이 일조, 소음 등 제한된 범위에서의 인정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침해에 대한 유지청구권의 법적 근거에 관하여는 물권적 청구권설⁴⁹⁾, 상린관계설⁵⁰⁾, 인격권설⁵¹⁾, 불법행위설(생활이익설)⁵²⁾, 환경권설⁵³⁾ 등 여러 가

48) ,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의 효율성 제고 방안, 인권과 정의 제294호, 2001, 제115면.

49) 환경침해를 토지나 건물 등의 소유권·점유권 등 물권 또는 물건화한 입자권에 대한 침해로 파악하는 견해로서, 피해자는 민법 제214조의 물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환경침해행위의 제거·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의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물권적 청구권설에 의하면, 유지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 고의·과실의 존재는 불필요하며 피해가 객관적으로 위법한 상태이기만 하면 족하다.

50) 물권적 청구권설과 마찬가지로 유지청구권을 물권적 권능의 일종으로 파악하지만 그 직접적인 근거규정을 민법 물권편의 상린관계규정에서 찾고자 하는 견해이다. 즉 매연 등에 의한 생활방해의 금지 및 인용의무에 관한 민법 제217조를 근거규정으로 하여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침해인 이상 피해자는 다른 근거를 채용할 필요 없이 직접 위 규정에 기하여 환경침해행위의 제거·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상린관계설의 입장에서 서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표적 판결로는 대법원 1974. 12. 24. 선고 68다1489 판결이 있다(다만, 위 판결이 민법 제214조와 별도로 민법 제217조를 독자적인 유지청구권의 근거규정으로 인정한 것인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51) 생명·신체·건강·명예·자유 등 개별적인 인격권을 아우르는 일반적인 인격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인격권은 물권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절대권이므로 환경침해에 대한 유지청구권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인격권설에 따른 대표적인 판결로는 부산고법 1995. 5. 18. 선고 95가합5 판결이 있으나, 위 판결의 상고심판결인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에서는 인격권에 기한 유지청구권의 허용가능성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을 유보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일반적인 인격권에 기한 유지청구권이 승인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52) 채권법상의 불법행위규정에 기하여 침해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까지 인정하는 견해로서, 유지청구의 근거로 반드시 물권이나 인격권 등의 지배권의 존재를 요구할 필요가 없고 보호받을 만한 생활이익의 침해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 그 자체의 효과로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의 제거·예방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고의·과실을 유지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 보는 순수한 의미의 불법행위설을 취하는 견해는 거의 없고,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만 있으면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는 신수인한도론이 불법행위설의 대세를 차지하고 있다.

53) 유지청구권의 근거를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찾는 견해로서 위 헌법 조항으로부터 직접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 즉 ‘환경권’이라는 새로운 하나의

견해가 주장되고 있으나, 대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유권, 점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로서 유지청구를 인정하는 외에 소유권과 독립된 환경침해로 인한 유지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소송에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원고적격의 제한을 민사소송의 영역에서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 아닐까 싶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유지청구를 인정하는 외에 현행법 하에서 유지청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⁵⁴⁾을 미국의 맑은공기법(Clean Air Act) 내지 맑은물법(Clean Water Act)와 같이 규제기준을 넘어서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이루어진 경우 환경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오염물질의 배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할 것이지만,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에서 법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경행정 소송의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5. 원고적격 확대 방안

(1) 원고적격 해석론

행정법학계에서는 행정소송법 제13조의 ‘법률상 이익’에 대해 다양한 해석론을 전개하여 왔는데, 통상 ‘권리회복설’, ‘법률상 보호이익설’, ‘보호가치이익설’, ‘적법성보장설’이라는 4가지 견해로 유형화되어 왔다. 권리회복설은 항고소송의 목적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개인의 권리회복에 있다고 보아, 권리가 침해된 자만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법률상 보호이익설은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침해되고 있는 이익이 관계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이익인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견해에 의하면, 환경침해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 또는 생활이익을 직접 침해받지 아니한 사람도 위 헌법조항을 근거로 가해자를 상대로 침해행위의 제거·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상의 환경권이 곧바로 사법상의 권리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였고,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그 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비교법적으로 볼 때 일본·미국·독일 등에서도 환경권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구체적인 사권으로 인정한 예는 없다.

54) 1990년에 수질환경보전법으로 제정되었다가 2007년 현재의 법명으로 개정되었다.

. 보호가치이익설은 행정소송법상의 '법률상 이익'을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실체법상의 이익이 아니라 그와는 성질을 달리 하는 일종의 소송법상의 이익이라고 보면서, 당해 이익이 관계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실질적 내용이 재판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 때에는 그러한 이익이 침해된 자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설은 원고적격의 판단 기준이 피침해이익의 성질을 관계법규정에 의존시키지 않고, 재판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견지에서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하려는 것이므로, 이 설에 의하면 사실상의 이익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적법성보장설은 취소소송의 목적이 행정의 적법성 보장에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적격의 문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익의 성질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처분에 대한 소송수행에 가장 적합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취소소송을 객관적 소송으로 파악하는 관점에 입각한 것으로서, 원고의 이익의 성질과는 일응 무관하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볼 때 취소소송이 민중소송화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⁵⁵⁾

그러나 환경행정소송 뿐 아니라 일반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도 행정법학계에서는 대체로 원고적격이 확대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왔다. 다만, 그 정도에 있어서는 항고소송의 주된 목적이 국민의 권익구제에 있다고 보는지, 행정의 적법성 통제에 있다고 보는지에 따라 원고적격의 확대의 정도나 방식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를 보여왔다.⁵⁶⁾ 필자는, 학계와 정부에서 원고적격 확대의 방법으로 논의되어 온 내용을 살펴보고, 현행 법체계 하에서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을 확대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원고적격 확대의 방법

() 행정소송법 제12조의 개정을 통한 원고적격 확대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2006년 4월부터 2007년 5월까지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특별 분과위원회에서 행정소송법 제12조의 개정안에

55) , 행정법 I, 박영사, 2007, 제677면.

56) 이회정, 행정소송법 개정안 중 원고적격에 관하여: 법무부 개정안을 중심으로, 고시계 제52권 제12호, 2007, 제28면.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위 분과위원회는 10여회의 전체회의를 마친 후, 실질적인 조문 성안 작업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안을 검토하였는데,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으로 개정하는 방안,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익'으로 개정하는 방안, '법적 이익', '정당한 이익', '보호가치 있는 이익', '충분한 이익' 등으로 개정하는 방안, '법률상 이익'이라는 법문은 유지한 채 해석기준을 두는 방안, 현 법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대법원 판례에 맡겨두는 방안⁵⁷⁾ 등이 개정안으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위 분과위원회는 오랜 회의를 통한 논의 끝에 결국 2007. 4. 경 행정소송법 제12조를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 주된 취지는 원고적격의 확대는 판례에 의한 점진적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⁵⁸⁾

필자의 사견으로는, 법무부 개정안이 행정소송법 제12조를 개정하지 아니한 취지도 그러하고, 위 규정을 '정당한 이익', '보호가치 있는 이익', '충분한 이익', '법적 이익' 등 어느 표현으로 개정하더라도 불명확하기는 마찬가지이므로, 원고적격의 확대 문제는 결국 개별 행정소송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원이 해석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 개별 법률에 의한 원고적격 확대

앞서 살펴본 미국의 맑은공기법(Clean Air Act) 내지 맑은물법(Clean Water Act)은 규제기준을 넘어서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이루어진 경우 환경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오염물질의 배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가 환경피해자들로 하여금 개별 법률을 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개별 법률에 의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직접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는 방법과 법원이 원고적격을 부여 할 자와 부여하지 않을 자를 구분할 수 있는 일응의 기준을 제공

57) 행정소송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제1회 실무위원회 참고자료, 2006, 제16면.

58) 다만 이는 그러한 취지에 대해서 위원회의 합의가 이루어진 결과라기보다는 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김성수,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및 기타 논점에 대한 지정토론, 행정 소송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대법원, 2004 및 배병호, 행정소송법 개정 논의경과, 제 11면 참고.

원고적격의 인정을 간접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그 거부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최근 지방자치법상 도입된 주민소송제도가 전자에 해당한다면⁵⁹⁾ 구 환경영향평가법의 제정으로 환경영향평가가 도입되어 법원으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구역 내 주민과 그 구역 외 주민으로 구분하여 전자에게만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후자의 예이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원고적격 확대에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므로, 개별 법률에 의한 이러한 규정은 매우 유용한 원고적격 확대 방법이다.⁶⁰⁾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같이 개별 환경법에서 소 제기 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환경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이고, 이 부분은 앞으로 입법자의 의지와 노력을 통하여 해결되기를 바란다.

() 판례 해석을 통한 원고적격 확대

기존 대법원 판결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법률상 이익을 엄격히 해석하여 왔다.

그러나 2005년 이후부터 대법원은 환경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원고적격의 인정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왔고⁶¹⁾ 특히 최근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이나 새만금사업 등과 관련하여 환경상 이익 등을 가지는 제3자로서의 주민의 원고적격에 대해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도 포함되며, 나아가 법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향권 밖의 주민들도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해석을 통하여 원고적격을 확대하고 있다.⁶²⁾

59) , 앞의 토론문, 제120면.

60) 이회정, 앞의 글, 제27면.

61)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241면.

62)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두13489 판결.

(3) 원고적격 확대를 위한 판례의 발전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일명: 새만금 사건)은 “행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다만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그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여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라고 하면서 처분의 근거법규가 아니더라도 공유수면매립법, 구 환경정책기본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에서 해당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3539명의 원고들 중 143명의 원고들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또한 최근 2013. 3. 14. 선고 2012두24474호(레미콘공장 설립승인처분 취소소송) 사건에서도 같은 이유로 경기도 양주군에 레미콘 공장신설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이 위 공장신설에 관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공장신설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수도관을 통하여 상수원의 물이 원거리까지 도달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것 이기는 하나, 관련법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영향권 범위 밖의 주민들의 원고적격

인정한 사안으로는,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낙동강 상수원 인근 공장설립 승인처분 취소소송)⁶³⁾이 있는데,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비록 나머지 원고들의 거주지역이 물금취수장으로부터 다소 떨어진 부산광역시 또는 양산시이기는 하나, 수돗물은 수도관 등 급수시설에 의해 공급되는 것이어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이 가지게 되는 수돗물의 수질악화 등으로 인한 환경상 이익의 침해나 침해 우려는 그 거주지역에 불구하고 그 수돗물을 공급하는 취수시설이 입게 되는 수질오염 등의 피해나 피해 우려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물금취수장에서 취수된 물을 수돗물로 공급받는 나머지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직접적으로 보호되는 환경상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주민으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은 수돗물은 수도관 등 급수시설에 의해 공급되는 특성상 환경상 침해나 침해 우려에 대한 영향권의 범위를 원고들의 거주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취수시설이 위치한 곳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해석하였는데, 이는 수질, 대기, 토양 등 환경상의 개별적인 요인과 특성에 따라 그 영향권의 범위를 다시 설정하고 그 범위에서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음을 선언함으로써 앞으로 환경소송에서 법해석을 통한 원고적격의 확대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이 계속되어 앞으로 행정소송의 영역에서도 법원이 환경분쟁 해결의 필요성과 중대성을 인식하여 원고적격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V.

지금까지 우리나라 환경전문재판부의 현황, 판결례 및 실무처리 방법을 살펴보고, 환경분쟁 해결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우리 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법원이 환경소송의 전문성 확보를 통하여 환경분쟁에 대한 인식과 접근방

63) 판결은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인 공장설립법령과 국토계획법령의 관계 규정에서 사익보호성을 도출하고, 또한 그 규정 자체가 환경상 침해나 침해의 우려에 대한 영향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법령 해석을 이끌어 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의견으로 김국현, 앞의 논문, 제509면 참조.

변화를 시도하고, 외부 기관이나 의료계, 학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과학적 증거수집 절차를 마련하며, 판례를 통한 행정소송의 원고적격 확대 노력을 지속한다면, 환경피해 예방과 구제 확대에 기여하는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법원의 위와 같은 노력 뿐 아니라, 학계 및 정부의 공조와 협력을 통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피해 구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2013. 11. 8. 심사일 : 2013. 11. 18. 게재확정일 : 2013. 11. 28.

- , “공정허가와 수돗물 급수 주민의 원고적격”, 『특별법연구』 제10집, 사법발전재단, 2012.
- 박준서, 『주석민법』(채권각칙 8),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 김동희,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의 개념”, 『법학』 제43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 이강원, “공해배상소송에서의 수인한도론과 공용관련하자”,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3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 손윤하, 『환경침해와 민사소송』, 청림출판, 2005.
- _____, “항공기소음에 의한 피해구제를 위한 민사소송의 문제점”, 『법조』 제54권 제3호, 법조협회, 2005.
- 강종선, “항공기소음 관련 민사소송의 제 논점”, 『사법논집』 제44집, 법원도서관, 2007.
- 박재철, “동경대기오염 제1차 소송”, 『환경소송의 제문제』, 사법발전재단, 2011.
- 이수진, “일조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문제”, 『환경소송의 제문제』, 사법발전재단, 2011.
- 김홍균,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의 효율성 제고 방안”, 『인권과 정의』 제294호, 대한변호사협회, 2001.
- _____, 『환경법』, 홍문사, 2010.
- 이영창, “환경소송에서 행정청의 재량에 대한 사법심사의 방법과 한계”, 『사법논집』 제49집, 법원도서관, 2009.
-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07.
- 이희정, “행정소송법 개정안 중 원고적격에 관하여: 법무부 개정안을 중심으로”, 『고시계』 제52권 제12호, 국가고시학회, 2007.
- 김성수,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및 기타 논점에 대한 지정토론”, 행정 소송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대법원, 2004.
-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 Mark Latham, "The Intersection of Tort and Environmental Law", *Fordham Law Review*, Volume 80 Issue 2, 2011.
- Justice Antonio H. Benjamin,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Court and Environmental Law in Brazil", Korea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 115th International Conference, 2013.
- Former Environmental Judge Merideth Wright, "Environmental Courts and Judges - Experiences of the Vermont Environmental Court and others since 1990", Korea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 115th International Conference, 2013.
- Justice Muryao Sila, "Experiences from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Kenya Environmental Court", Korea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 115th International Conference, 2013.

Abstract]Future Directions for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in
the Korean Court

Lee, Sujin

(Judge, Incheon District Court)

The first civil action seeking damages from automobile gas emissions was brought to the Korean Court on January 2007. Twenty three residents in Seoul who were suffering from asthma or chronic bronchitis claimed damage and injunctions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major car manufacturing companies to place restrictions on nitrogen dioxide and fine particle dust emissions. The Chamber for Environmental Trials i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turned down the lawsuit on January 2010, saying the causality between gas emissions and the plaintiffs' disease was not sufficiently proved. After nine months of hearing, the Seoul High Court dismissed the plaintiffs' appeal with the same reasoning. The residents appealed to the Supreme Court and the First Air Pollution Case in Korea is still ongoing.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CACA) and the Water Quality Conservation Act (WQCA, which was renamed to the Water Quality and Hydro Ecosystem Conservation Act in 2007) was first enacted in 1990. In contrast with the Clean Air Act (CAA) and Clean Water Act (CWA) in the United States, Korean Environmental Law including CACA and WQCA provides neither a private right of action nor a private right of enforcement. For this reason, private law remedies which were made by the environmental victims have been private environmental claims for injunctions or damages in civil procedure, especially torts. Therefore, the First Air Pollution Case in Korea is a reflection of developing series of environmental actions in private law, and has a great meaning for the future directions of environmental trials.

The first-ever environmental claim for damage was filed on February 1998 by the residents in Maehyang-ri who were seeking compensation for damage from

the noise of army target practice, and the first-ever court decision ordering solatium for the suffering of the residents was made in April 2001. Starting with this claims for noise damages, the Korean Court has made a lot of progress ordering compensation for damages from noise disturbance and sunlight blocking conflict. However in areas where there is no immediate accident or event giving rise to the action, but rather a gradual release involving multiple hazardous substances with differing degrees of potential toxicity and exposure routes, or multiple potential sources or defendants, the Korean Court has not made satisfactory resolution of the claim. Health damages caused from air pollution or water pollution can create significant damage to the victim's quality of life. Furthermore, as the air and water pollution around the world is becoming more serious, the latter areas are becoming the main environmental dispute in the Korean Court. Therefore there is a strong need to not only try to specialize environmental trials and make environmentally specialized courts or chambers more effective in resolving environmental dispute, but also to develop environmental legal theories and cooperative with environmental scientists and doctors to heighten environmental victim protection.

제 어 , 대기오염, 전문재판부, 입증책임 완화, 원고적격
Key Words Environmental Trial, Air Pollution, Specialized Court, Ease of Proof, Standing